

6. 地價公示 및 土地等の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

건설부령 제469호 1990. 10. 26.
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지역분석조서
2.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
3.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청취결과서
4. 표준지의 위척근 표시한 지번도(지

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1 지형도, 지번도 및 5천분의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1 지형도)

5. 토지대장등본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

[별지 제2-1호서식]·[별지 제2-2호서식] 및 [별지 제2-3호서식]을 각각 삭제한다.

[별지 제2호의2 서식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표준지조사평가 보고서

①일련 번호	②소재지	③면적 (㎡)	지 목		⑥지리 적위치	⑦이용 상황	⑧용도 지역	⑨주위 환경	⑩도로 교통	⑪형상 및지세	⑫평가가격			
			④공부	⑤실제							평균	A	B	

30301-12811보
'90. 10. 8. 승인

380mm × 268mm
(인쇄용지(2급) 60g/㎡)

[별지 제2호 서식]

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

표준지 번호: _____

소 재 지					
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분석	지 목	공부:	실제:	면적	㎡(평)
	지리적위치				
	주 위 환 경			형상	
	이 용 상 황			지세	
	접 면 도 로			방위	
	도시계획및 공 적 규 제	용도지역:			
		용도지구:			
		구역, 기타제한사항:			
	간 선 도 로	구분:		구조:	
		포장:	지상물		
	거리:	용도:			
교 통 사 정					
기 타	상수도:	하수도:	전기:		
	주요공공시설과의 거리:				
참 고 도 서	공 시 지 가	19 년 공시지가(개별지가)			원
	거 래 사 례				
	평 가 선 례	소재지:	지목:		
		평가일자:	목적:	금액:	원
세 평 가 격					
평 가 의 견					
평 가 가 격	원/㎡				

30301-13111일
'90. 10. 8. 승인

190mm × 268mm
(신문용지 54g/㎡)

[별지 제2호의 2 서식]

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서

구 분	내 용
의견청취일자	• 요 청 일: •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일: • 의견회신일:
주요의견	
반영여부	
구비서류: 1. 의견청취요구서 사본 1부 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회신공문서 사본 1부.	

30301-16311일
'90. 10. 8. 승인

190mm × 268mm
(신문용지 54g/m²)

◀ 개정이유 ▶

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적정가격 등을 조사·평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표준지조사 평가보고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임.

◀ 주요골자 ▶

- 가.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의 첨부서류중 그 기재내용이 상호 중복되는 3개 서식을 1개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함(제2조 제2항 제2호).
- 나.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(제2조 제2항 제3호).

〈건설부 제공〉